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3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7.

발 의 자 : 허성무 · 조인철 · 김문수
박민규 · 임미애 · 손명수
안도걸 · 박선원 · 김태선
양문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첨단산업 기술정보, 제조 노하우, 고객 명단 등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위법하게 취득·사용·공개되어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존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은 물론,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.

현행법은 영업비밀의 훼손·변경·위조·유출, 직무 관련 비밀 누설 및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, 벌칙 적용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, 여전히 기업의 기술 정보 유출, 해킹사고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제재방안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, 시정명령의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,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

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국가 경제 및 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
(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).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5의 제목 “(과징금)”을 “(원본증명기관에 대한 과징금)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조사)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지식재산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분쟁조정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,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
④ 지식재산처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3(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등)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, 향후 재발 방지,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② 지식재산처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4(의견청취) 지식재산처장은 제12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, 시정명령 및 공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·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12조의5(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)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

이익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·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제12조까지의”를 “제12조의5까지의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18조제4항”을 “제12조의2, 제12조의3, 제18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제7조나 제8조에”를 “제7조, 제8조,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에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1호 중 “제7조제1항에”를 “제7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의2 중 “제8조제1항에”를 “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징금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의5(과징금) ① ~ ③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9조의5(원본증명기관에 대한 과징금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의2(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조사)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지식재산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</p>

사안으로 분쟁조정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,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
④ 지식재산처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12조의3(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등)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, 향후 재발 방지,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② 지식재산처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

<신 설>

<신 설>

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4(의견청취) 지식재산처장은 제12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, 시정명령 및 공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·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12조의5(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)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제13조(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) ①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(생략)

제1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(생략)

②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·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) ① -----

-----제12조의5까지
의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<p>1의2. <u>제8조제1항에</u> 따른 시정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1의2. <u>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</u>-----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